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의안 / 번호 202

제출년월일: 1993 . 7 .

제 출 자:대전직할시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조 제2항에 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내지 안 제5조, 안 제8조)
- 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배부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
- 라.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였음 (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
- 마.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 11조)
-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 (따로붙임 참조)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 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①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11인의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5인의 위원은 위촉 위원으로 한다.
 - ③ 당연직위원은 대전직할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 부교육감. 각국장. 기획감사 담당관 및 행정과장이 되고, 이중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며, 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 ④ 위촉위원은 교육 및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 1. 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2.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4.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

- 제5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6조 (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
- 제9조 (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 (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법령: 지방재정법

제6조 (교육. 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장"으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장"으로, "시·도지사"는 "시.도의 교육장"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각각 본다.

- 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하"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 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조의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